

##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2. 3. 28 규칙 제 673호  
일부개정 2014. 8. 11 규칙 제 756호  
일부개정 2017. 8. 7 규칙 제 881호  
일부개정 2021. 12. 20 규칙 제106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) 「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설치방법, 관리기준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안내 표지의 모양,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8. 7>

[제목개정 2017. 8. 7]

제3조(금연구역의 경계표시)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. <개정 2017. 8. 7>

1.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
2. 도면
3.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

### 부칙

이 규칙은 201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8. 11 규칙 제75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8. 7 규칙 제88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20 규칙 제106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는 개정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] <개정 2021. 12. 20>

##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(제2조 관련)

### 1. 표시방법

#### 가. 전용서체

- 1) 국 문: 윤고딕340(장평94%, 자간50)
- 2) 영 문: Frutiger55

#### 나. 색상

- 1) 레 드: C 10%, M 100%, Y 100%, K 0%
- 2) 화이트: C 0%, M 0%, Y 0%, K0%
- 3) 블 랙: K 100%
- 4) 문구 색상은 눈에 잘 띄도록 배경색과 차별화된 색상으로 배색할 것

#### 다. 표기내용 및 방법

- 1) 금연로고, 금연구역 표시
- 2) 금연구역 조성목적,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
- 3) 금연구역 경계 표시
- 4)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#### 라. 도안 예시



## 2. 설치방법

가. 금연구역 안내 표지는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.

- 1)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
- 2)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
- 3)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

나. 표지판,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.

다. 눈·비·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.

## 3. 관리기준

가.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 표지를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.

나.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색이 바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.

다. 금연구역 안내 표지가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.